

농 촌 진 흥 청

주 의 요 구

제 목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평창군

내 용

평창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약용작물의 재배·생산·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으로 안전성 및 고품질화 도모를 위하여 “2014년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”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2014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르면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, 객관성,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

평창군에서는 「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규칙」에 의한 “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,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”을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도 평창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2014년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(사업비 166백만원) 대상자 선정 시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공무원 7명으로만 구성하여 2014년 농가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평창군수는

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 및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